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박 검 수

2016년 5월 20일

1. 제안이유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나누어주는 재능나눔 활동에 대한 권장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명을 개정함
- 나.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의 목적을 규정함(제1조)
- 다.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의 개념과 범위를 규정함(제3조)
- 라.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규정함(제6조)
- 마.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개인 및 법인, 단체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22조

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나. 예산조치: 불필요

다. 사전협의: 주민생활지원과

라. 입법예고(2016. 4.15. ~ 2016. 4.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제1187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장의 제목 “총 칙”을 “총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자원봉사활동”을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으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정하고 주민 및 봉사단체의 자원봉사활동”을 “규정하고 주민 및 봉사단체의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으로 한다.

제2조 중 “자원봉사활동”을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으로, “자원봉사자”를 “재능기부자 및 자원봉사자”로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을 ““자원봉사활동”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자원봉사단체”라 함은”을 ““자원봉사단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자원봉사수요자”라 함은”을 ““자원봉사수요자”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자원봉사센터”라 함은”을 ““자원봉사센터”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재능나눔”이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 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나누어주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

음의 각 목과 같다.

가. 법률 분야: 법무, 노무, 세무, 행정 등

나. 의료 분야: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다. 문화예술체육 분야: 공연, 전시, 연주, 체육, 행사 지원 등

라. 전문기술 분야: 건축, 토목, 전기, 디자인 등

마. 사회복지 분야: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 지원 등

바. 교육 분야: 학습지도, 교육 및 진로 상담 등

사. 그 밖의 사회 서비스 분야

7. "재능기부자"란 재능나눔 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 중 "자원봉사활동"을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으로, "강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을 "마련하고"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자원봉사활동"을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센터"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자원봉사자"를 "재능기부자 및 자원봉사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원봉사"를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시행하는"을 "시행하는 재능나눔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자원봉사수요자발굴 및"을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수요자 발굴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자원봉사활동"을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조직에 관하여"를 "조직에"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자원봉사자문위원회 구성·운영)"을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자문위원회 구성·운영)"으로 하고, 제9조제1항 중 "센터의 운영"을

"센터의 운영과 재능나눔"으로, "자원봉사자문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자문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자원봉사"를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구성·운영"을 "구성 및 운영"으로 한다.

제10조 중 "자원봉사"를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자원봉사활동"을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원봉사활동"을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자원봉사단체"를 "재능기부자 및 자원봉사단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조례·규칙"을 "조례·규칙"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원봉사단체"를 각각 "재능기부자 및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원봉사자"를 "재능기부자 및 자원봉사자"로, "자원봉사활동"을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자원봉사"를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자원봉사활동"을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자원봉사활동"을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원봉사"를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자원봉사활성화"를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성화"로, "자원봉사활동"을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원봉사활동"을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

3항 중 “자원봉사자”를 “재능기부자 및 자원봉사자”로, “자원봉사활동”을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으로 한다.
제15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